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감염병관리위원회에 ‘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’를 신설하여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, 예방접종의 내역 제공 및 역학조사의 방법에 전자적인 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에 관한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

제21조의4제1항 단서 중 “문자전송, 전자메일, 전화,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”을 “전화, 우편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“제29조제1호”를 추가한다.

별표 1의3 제1호가목1)라) 단서 및 같은 목 2)다) 단서 중 “전화나 우편, 전자우편 등”을 각각 “전화, 우편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전문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. 1. ~ 10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~ ④ (생략)	제7조(전문위원회의 구성) ① --- -----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11.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</u> <u>회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1조의4(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)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열람의 방법으로 제공한다. 다만,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<u>문자전송, 전자메일, 전화,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</u>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21조의4(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<u>전화, 우편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</u> ----- 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3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~ ③ (생략)	제3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·제14호부터 제17호까지, <u>제16조의2제2항</u>, 제41조제3항, 제41조의2제3항, 제70조의3제1항·제2항, 제70조의4제1항 및 제71조제2항·제3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⑤ (생략)	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6조의2제2항, 제29조제1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3) 719 - 7136